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68호

2018년도 하반기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경력경쟁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중앙소방학교장

I. 시험개요

1. 관련근거

- 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채용요건), 제34조(시험실시권)
-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 가. 채용직급 : 총 30명(소방교 1, 소방사 29)
- 나.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계급	인원	성별	채용요건
소방청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1	남	경력
중앙119구조본부	구조	소방사	29	남	경력

3.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8.20.(월) 09:00	제1차시험	필기시험	9.21.(금)	10.13.(토)	10.26.(금)
	제2차시험	체력시험	10.26.(금)	11.12.(월)~11.20.(화)	11.23.(금)
'18.8.24.(금) 18:00	제3차시험	서류전형	-	12.4(화)	12.27.(목)
	제4차시험	신체검사	11.20.(화)	11.26.(월)~11.30.(금)	12.27.(목)
※ 취소기간 '18.8.20.(월) 09:00 ~8.27.(월) 18:00	제5차시험	인적성검사	11.20.(화)	11.26.(월)~11.30.(금)	-
		면접시험	12.5.(수)	12.10.(월)~12.14.(금)	12.27.(목)

※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병역법」 제76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나.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항공운항관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또는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계급 : 붙임1 참고
구조	◇ 다음의 군(軍)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p><기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자격증 취득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불인정) • 학력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당해 학력을 취득하여야 함 • 경력기간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 경력산정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1998.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2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2-1 참고)

마.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바. 거주지 : 제한 없음

II .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8. 8. 20.(월) 09:00 ~ 8. 24.(금) 18:00 / 5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2018.8.27.18:00)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5,000원) 환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	5%, 10%	3%, 5%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 ※ 2017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 모두 적용

바.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산점 확인

구분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원서접수 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8. 8. 25.(토) 16:00 ○ 내용 : 채용분야 및 남·여 응시자 현황 ○ 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 최종원서 접수결과는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확정(2018.8.28)
응시자 가산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8.10.2.(화) 14:00 ~ 10. 4.(목) 18:00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 접속 확인 ※ 사이트 접속(응시자) → 로그인 → 성적조회

사. 접수증 출력

-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응시지역 등 확인

아. 유의사항

- 응시표 출력은 2018. 9. 21.(금) 14:00 이후 중앙소방학교 원서 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Ⅲ.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10. 13.(토) 10:00 ~ 11:00(60분)

※ **당일 09:30까지 시험장 입장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9. 21.)

다. 시험과목 : 3과목

채용분야(채용계급)	시험과목
▶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¹⁾
▶ 구조분야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 ²⁾ , 소방학개론
1)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2)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라. 시험문항 및 시간 : 총 6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60분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문제지 및 가(정)답안 공개* : 2018.10.13.(토) 14: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게시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이의제기>

- ◇ 운영기간 : 2018. 10. 13.(토) 14:00 ~ 10. 14.(일) 24:00
- ◇ 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신청
- ◇ 절차 : 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 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2. 필기시험 점수 등 사전공개

- 가. 공개기간 : 2018. 10. 22.(월) 14:00 ~ 10. 23.(화) 18:00
- 나. 공개방법 :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공개(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다. 공개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및 가산점

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가. 공고일시 : 2018. 10. 26.(금) 14:00
-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esa.go.kr>) 게시
- 다. 공고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선발예정인원	1명 ~ 30명	31명 ~ 40명	41명 ~ 50명	51명 이상
필기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8배수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IV. 체력시험

1. 체력시험

- 가. 시험일시 : 2018. 11. 12.(월) ~ 11. 20.(화) ※ 시험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장 등록 완료(시간 초과 시 입장 절대 불가)
-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10. 26.)
- 다.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라.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마. 시험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

- 바.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일별 시험종료 후
- 나. 채취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 다.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 라. 시료검사 :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노비중 검사
- 마. 시료운송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핑테스트 의뢰
- 바.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 사.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 응시자 이의신청 기회부여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 가. 공고일시 : 2018. 11. 23.(금) 14:00
-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p><체력시험 합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 체력시험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
--

V. 서류전형

1. 서류제출

- 가. 제출일자

채용분야	제출일자	제출대상	제출방법
항공운항관리·구조	체력시험 등록 시	필기시험 합격자	방문

* 체력시험 등록 시 서류 미제출자는 체력시험 최종일 18:00까지 제출(도착분까지 인정)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항공운항관리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조	① 군(軍)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통제출서류	① 운전면허증(사본) ②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병역사항기재) ④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서류제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을 알 수 있어야 함
- 3개월 전 발행된 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은 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18.5.19.)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2. 서류전형

가. 확인기간 : 2018. 12. 4.(화) 한

나. 확인방법 :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3.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불합격자 개별통보)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Ⅵ. 신체검사

1. 신체검사

- 가. 제출기한 : 본인 인·적성검사 등록 시 신체검사서 제출
 * 당일 미제출자는 최종 인·적성검사 종료일 18:00까지 제출(도착분까지 인정)
-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붙임 참조)
 ※ 중앙소방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은 종합병원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다.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라. 검사방법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18.12.4.(화) 18:00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신체검사 주의사항>

-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7.11.26. 이후 발행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만 유효
-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 가. 공고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불합격자 개별통보)
-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신체검사 합격기준>

-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별표5)
- ☞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3에 의함

VII. 면접시험

1.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시 : 2018. 11. 26.(월) ~ 11. 30.(금)

나. 검사장소 : 별도공고(2018. 11. 20.)

다.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12. 10.(월) ~ 12. 14.(금)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12. 5.)

다.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블라인드 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 (합 격) 1단계와 2단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 (불합격)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VIII.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12. 27.(목)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최종 합격기준>

-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2. 합격증명서 발급

가. 발급기간 : 2018. 12. 27.(목) ~ 2019. 1. 2.(수)

나.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IX.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을 실시하는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경력경쟁채용분야의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입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2.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변경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응시지역을 확인하고,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결격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운전면허 미 취득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접수 종료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가산점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일 {2018.10.12.(금)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18.10.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지역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에는 OMR 판독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불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사용 및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 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지는 통합편철되므로 응시자는 응시분야의 시험과목을 정확히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는 생활영어 선택

구분	문제지 편철순서
시험과목	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④ 소방관계법규 ⑤ 영어

-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를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운영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4. 체력시험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신체검사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 사전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은 응시자는 2017. 11. 26. 이후 발행 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만 유효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인·적성검사 실시일에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신임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경비(보수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합니다.

7.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시험관련 사항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550-0961~6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붙임 1. 계급환산 기준표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4-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5-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5-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 5-3. 도핑테스트 관련 처리 절차 1부.
6.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10.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11.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2.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1부.
1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붙임 1>

계급환산 기준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기 업체
				초·중·고등학 교직원	전문대학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지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위	중위·소 위·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1	<h2 style="margin: 0;">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h2> <p style="margin: 0;">(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p>
------------	--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p>가. 중증 요실금</p> <p>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p> <p>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p> <p>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p>
8. 내분비 계통	<p>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p> <p>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p> <p>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p> <p>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p>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p> <p>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p> <p>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p> <p>마. 진성적혈구 과다증</p> <p>바. 백혈병</p>
10. 신경 계통	<p>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p> <p>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p> <p>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p> <p>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p> <p>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11. 사지	<p>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p>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족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체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	---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 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5-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5-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5-3

도핑테스트 관련 처리 절차

□ 사전준비사항

- 시료채취실(대기실, 행정실, 화장실 등 시료채취 별도 공간) 확보
- 시료채취 책임관 지정(소방위 이상)
- 시료채취 용기(요비중계) 등 준비
- 시료보관용 박스 또는 냉장고 등 준비

□ 처리절차

- ① 채용시험 공고문에 도핑테스트 실시 고지 및 안내(안내문 배부)
- ② 원서접수 시 동의서 징수
- ③ 시험진행절차에 의하여 필기합격자 체력검정 실시
- ④ 도핑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체력시험(전) 공개적으로 선정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체력시험 대상자의 7%이내

{예: 추천함에서 추천자를 추천한 후 추천자로 선정된 응시자가 추천하는 방식(번호뽑기 등)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⑤ 도핑대상자 시료수집책임관과 동행하여 시료채취



시료채취통에 약 90ml 소변 채취

- ⑥ 검사용 용기에 소분



- 1) A병 : 50ml, B병 : 40ml 소분
- 2) 시료봉인후 일시, 장소, 피채취자, 채취자 피채취자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

- ⑦ 검사용 용기(A,B)를 봉인봉투에 포장, 발송준비



- ⑧ 소변 채취통에 잔여분으로 뇨비중 검사



- ⑨ 뇨비중 검사후 적정비중(1.005)이하인 경우 시료 재 채취

- ⑩ 채취한 소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택배 배송 및 문서작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마약분석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번지)

※ 우체국 택배 이용하며, 아이스팩으로 보냉조치 후 이송

※ 문서작업 : 도핑인원 1인당 1건의 문서 발송(중요)

- ⑪ 처리기한 : 14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후)

□ 기타사항

- ① 처분 및 이의신청 등

- 비정상분석결과시 응시자에게 서면 통보 및 B시료 검사 등 조치
- 부정행위로 처분 시, 이의신청 제기

- ② 약물검사시 마약류 성분 검출시, 경찰에 수사 의뢰

<붙임 6>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붙임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시)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대상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표기 및 증빙 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 없음)
- 가산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붙임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9>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5cm×4.5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혈	압
맨눈시력	좌:	색	신	(교정)청력	좌: ()
	우:				(색 각)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11>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국가소방공무원경력채용시험	응시계급	지방소방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12>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성 명	(응시번호)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 • 이 때 일 :
응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소방공무원(소방교, 소방사) • 항공운항관리, 구조
질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목 :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p><출제문제></p> <p><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p> <p><응시자 의견></p>	

<붙임 1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지역	주 소	전화번호
1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2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남양동)	033-570-7418
3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종랑구 신대로 156 서울의료원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사랑관 지하2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7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1층 건강관리과	02-920-9114
8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9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359
10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22)	064-786-7282
11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이도2동)	064-750-9199
12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064-717-1580
13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062-602-6114
14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치평동)	062-600-7000
15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16	구미 순천향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1-6288
17	포항 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054-272-0151
18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삼룡동)	041-570-7200
19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2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웅진동)	041-962-1111
21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3-2191
22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422
23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16(두모동)	055-680-8700
24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25	김해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삼계동)	055-330-0268
26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063-250-8770
27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80-8114
28	원광대학교 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063-859-1300
29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063-530-6625
30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28547)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2366
31	하나병원	충청북도	(28378)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1262	043-230-6584
32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27486)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4
33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29031)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	043-730-7101
34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555
35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114
36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6239
37	경북대학교 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	053-200-5791
38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동산동)	053-250-7689
39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	053-650-3434
40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447
41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63-940-7025
42	영남대학교 의료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43	의료법인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1(수동)	053-605-3591
44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45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1661-0033
46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84
47	좋은삼성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052-220-7535
48	구포성심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구포동)	051-330-3996
49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명륜동)	051-550-9300
50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 109번길 27(안락동)	051-520-5546
51	부산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거제동)	051-607-2491
5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051-240-7891
53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용호동)	051-933-7672
54	광혜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96(온천동)	051-504-2112
55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051-610-9873
56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덕천동)	051-330-3028
57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우동)	051-602-8137
58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좌천동)	051-664-4054
5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좌동)	051-797-0370
60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좌천동)	051-630-0417
61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범천동)	051-608-0270
62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양정동)	051-850-8763
63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051-601-6141
64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봉래동3가)	051-410-6700
6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1106
66	한마음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21	055-267-7746
67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45	055-270-1052
68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055-280-0396
69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158	055-233-6010
70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91
71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MH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471
72	진해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2번길 13	055-548-7794
73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74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75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76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77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 검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042-280-8535
78	대청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322(정림동 716)	042-589-6553~4